

의안번호	2220103
의 퇴 인	임종득의원
회 답 일	2026. 8. 25.
추계번호	26C2474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 주기로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6억 4,600만원(연평균 1억 2,9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농어촌 보건복지 실태조사 실시 (안 제6조)	323	-	-	323	-	646	129

주: 합계는 단수조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 (실태조사의 실시)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농어촌의 보건복지 수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공표하여야 함 ※ 현행 실시 주기: 5년	의무규정
2	안 제26조의2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제1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농어촌 거주 가구 중 아동·노인·장애인 가구, 가족돌봄 가구, 저소득층 가구 등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요인으로 인하여 안전사고에 취약한 가구를 대상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재량규정
3	안 제26조의2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제3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신청한 가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해당 가구에 제공하여야 함 1. 65세 이상의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2.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으로 구성된 가구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미성년자인 사람으로만 구성된 가구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6조 (실태조사의 실시)	○	○ 농촌진흥청의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2	안 제26조의2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제1항	×	○ 개정안 시행에 따라 현행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대상자가 확대되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안 제26조의 2제4항은 해당 서비스 제공의 내용·기준 및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확대될 대상자 수 등을 합리적으로 추계 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현재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 기준 329억 3,700만원이 편성됨(중앙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관리비를 제외한 사업예산은 321억 7백만원이며, 국고보조율 50%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
3	안 제26조의2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제3항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서는 안 제6조의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 이 외의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추계에 필요한 정보의 부재로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어 추계대상에서 제외(위 ‘재정수반별 추계 여부’의 [표] 참고)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 주기로 농어촌 보건복지 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하는 경우 연구용역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현행법 제6조제3항¹⁾에 따라 농촌진흥청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실시하는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조사”와 통합하여 실시
 - － 보건복지부의 별도 예산은 소요되지 않음
 - 개정안 시행 시 농촌진흥청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와 별도로 보건복지부가 자체 농어촌 보건복지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는 해당 법률에 실시 주기가 5년으로 명시되어 있음
- 농촌진흥청이 2023년 실시한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조사(종합조사)” 연구용역 사례를 참고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농촌진흥청이 가장 최근 실시한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조사”의 종합조사 시점은 2023년이며, 3억 2,300만원의 연구용역비가 소요됨
 - － 농촌진흥청은 5년주기로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조사”의 종합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의 연도에는 매년 부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본 추계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별도로 시행할 실태조사에 농촌진흥청의 유사사례(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조사(종합조사)) 단가인 3억 2,300만원이 동일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 － 추계기간 단가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추계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 주기로 농어촌 보건복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6억 4,600만원으로 추계

1)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표 2] 농어촌 보건복지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농어촌 보건복지 실태조사 실시(안 제6조)	323	-	-	323	-	646	12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김우림	문지은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우림	02-6788-3738	wrkim@assembly.go.kr